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2.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구 분	직 위	등 급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경북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경상국립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국립공주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국립군산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국립목포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국립부경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부산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국립순천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국립경국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전남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국립창원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충남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	나등급